

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

문서번호 에이피 2024-72

2024. 10. 30.

수 신 금융감독원장

참 조 (담당 부서장)

제 목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
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2항,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불임과 같이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)의 선임을 보고합니다.

- 불 임 : 1.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내용 1부
2.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심사표 1부. 끝.

에이피자산운용 사내이사 이재선 (인)



작 성 자 : 김희량 (전무)

전화번호 : 02-783-8674

(붙임 1)

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내용

1.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

성명 (한자)	직위	임원 여부	주민등록 번호 (앞의 6자리)	선임일	임기 (만료일)	업무 범위	겸직 직위 및 업무	주요 경력 ¹⁾	자격요건 확인결과
김희량 (金禧良)	전무	N	660915	2024. 10.25	2026. 10.25	내부통 제 및 리스크 관리 총괄	-	우리은행 1999.06~ 2021.01 우리미소 재단 2021.07~ 2022.10 우리은행 2022.11~ 2023.10	적격

주 1) 주요 경력란에는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학력 또는 기관에서의 근무경력과 최근 5년간의 근무경력을 연월 단위로 기재

2.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사임

성명 (한자)	주민등록번호 (앞의 6자리)	선임일	사임일	사임사유 ¹⁾	비고 ²⁾
김정환 (金廷煥)	680721	2024.01.25	2024.10.07	개인 사정 퇴사	

주 1) 사임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이사회 결의서, 사직서 사본 등) 첨부

2) 향후 준법감시인(또는 위험관리책임자) 선임일정 및 절차 등

(붙임 2)

준법감시인 선임 심사표

성 명 (한 자)	김희량 (金禧良)	직 위	전무
심 사 항 목		심 사 결 과	비 고
1.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, 그 밖에 다음 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인 없을 것 1) 해당 임직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 2)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이 아닌 자로서 금융관계법령에서 조치 권한을 가진 자		해당사항 없음	
2. 법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*. 다만, 각 목(법 제26조제1항제2호라목 후단의 경우는 제외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6조제1항제2호라목 전단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.		법 제26조 제1항 제2호 가목(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)에 해당	
3. 법 제29조 및 영 제2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것		해당사항 없음	
총 합 의 건 경력과 결격사유 및 징계내역 없음으로 확인한 바 당사의 준법감시인으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			
2024년 10월 30일 에이피자산운용 주식회사 준법감시인 김희량 (인) 에이피자산운용 주식회사 사내이사 이재선 (인)			

*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중 해당하는 목을 기재하고, 관련 경력을 상세하게 기재

【첨부서류】

1. 이사회 결의서
2. 금융회사 임원 약력표 등을 포함한 이력서(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)
3.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기관,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, 그밖의 감독·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(감봉요구)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준법감시인 선임일 이후 발급된 인사기록카드, 감독기관·소속기관의 확인서 등)
4.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이전 및 현재 근무처의 근무확인서(경력증명서 등)
5. 외국인의 경우 금융법규상 준법감시인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및 현재 근무지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준법감시인 선임일 이후 발급된 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지의 확인서 등. 다만, 준법감시인 선임 보고기한 내 동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및 준법감시인 선임 심사 시 실제 활용했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되, 추후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재보고 필요)
6.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)

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심사표

성 명 (한 자)	김희량 (金禧良)	직 위	전무
심 사 항 목		심 사 결 과	비 고
1. 법 제28조제3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, 그 밖에 다음 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인 없을 것 1) 해당 임직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 2)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이 아닌 자로서 금융관계법령에서 조치 권한을 가진 자		해당사항 없음	
2. 법 제28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*. 다만, 법 제28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8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.		법 제28조 제3항 제2호 가목(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)에 해당	
3. 법 제29조 및 영 제2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것		해당사항 없음	
중 합 의 건 경력 및 결격사유 및 징계내역 없음으로 확인된 바 당사의 위험관리책임자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			
2024년 10월 30일 에이피자산운용 주식회사 준법감시인 김희량 (인) 에이피자산운용 주식회사 사내이사 이재선 (인)			

* 제28조제3항제2호 각 목 중 해당하는 목을 기재하고, 관련 경력을 상세하게 기재

【첨부서류】

1. 이사회 결의서
2. 금융회사 임원 약력표 등을 포함한 이력서(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)
3.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소속기관,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, 그밖의 감독·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(감봉요구)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위험관리책임자 선임일 이후 발급된 인사기록카드, 감독기관·소속기관의 확인서 등)
4. 법 제28조제3항제2호 및 영 제23조제3항에서 정하는 이전 및 현재 근무처의 근무확인서(경력증명서 등)
5. 외국인의 경우 금융법규상 위험관리책임자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및 현재 근무지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위험관리책임자 선임일 이후 발급된 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지의 확인서 등, 다만,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보고기한 내 동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심사 시 실제 활용했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 하되, 추후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재보고 필요)
6.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)